

#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82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,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대학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.
- 안 제3조 본문 중 ‘확산할’ 을 ‘확산될’ 로 수정함(안 제3조).
- 재정지원 항목 중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(안 제6조).

#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안 제3조 중 “확산할”을 “확산될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 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확산될----- -----</p>
<p>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<u>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아침밥 먹는 학생의 숫자에 따른 식대</p> <p>2.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, 홍보비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재정지원) ① ----- ----- ----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-----.</p> <p>1. (삭제)</p> <p>2. (삭제)</p> <p>② (조례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
2.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
3.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5.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,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,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, 유관기관 및 단체,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